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0728 자동차세.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2. 26.
판 결 선 고	2016. 3.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56,1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의 모 B(신장장애 2급)과 공동 명의로 2014. 10. 27. 차고지를 원고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8

B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redacted]구 C, B동 [redacted]호'로 하여 D 파사트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이전등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B은 2014. 11. 3. 주민등록상 주소를 [redacted]군 E로 이전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1,256,100원(가산세 227,1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redacted]시장은 2015. 6. 3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신장장애 등 치료를 위하여 [redacted]군에 거주하던 B을 원고의 주소지로 옮겨 계속 모시려 하였다. 그런데 [redacted]로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런 환경 변화 등으로 B의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또한 신장투석비용 등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있어야 하므로, B은 부득이 다시 [redacted]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따라서 B이 세대를 분가한 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이러한 실질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8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며, 원고에게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본문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본문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B이 겪은 급격한 환경변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B이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지방세법 제20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면제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신고·납부의무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8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이민구

판사 이정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8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8

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끝.